

문서번호	가족담당관-1353			
결재일자	2018. 1. 17.	시 민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주무관	가족지원팀장	가족담당관
방침번호		양미아	안경천	이은영
				여성가족정책실장
				01/17 엄규숙

I·SEOUL·U

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

2018. 1

여성가족정책실
(가족담당관)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서울특별시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* 비교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지역아동센터
사 회 적 약 자 배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아동
성 별 분 리 계	●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인적통계 남·여 구분, 수해집단의 남·여 구분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아동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아동복지교사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 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 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불필요한 외국어와가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 예) 스페이스, 플랜, 양커시설, 가버너스, 인큐베이팅, 매칭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지 속 가 능 성	●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의 보전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

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 제공,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·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추진개요

□ 근거

- 아동복지법 제59조(비용보조)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(비용보조)
-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

□ 추진배경

-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·교육·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
-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을 2004년부터 법적 근거(아동복지법 제52조)를 마련하여 지원 시작

II 현황 및 추진실적

□ 현 황('17년 12월 기준)

(단위 : 개소 / 명)

435	총 개소 수			종사자 수	이용 아동수	특성별 운영	
	운영비 지원 형태					특수 목적형	토요 운영
	국·시비 지원 (2년 이상)	시비 지원 (1년 이상~2년 미만)	국·시비 미지원 (1년 미만 신고시설)				
	421	11	3	1,030	11,284	61	168

□ 추진실적('10년~'17년)

○ 내용 : 종사자 인건비, 운영비, 프로그램 사업비 등

(단위 : 개소 / 백만원)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지 원(개소수)	296	323	349	382	408	416	422	430
예 산(백만원)	12,073	17,850	22,088	23,508	31,387	32,937	33,407	35,725

III 지원계획

□ 추진체계

추진주체		기능 및 역할
보건복지부	아동권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본계획 수립, 지침 마련, 법령·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○ 국고보조금 지원,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·사업총괄 및 평가 ○ 사업운영 지도·점검, 평가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·보급 ○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○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·조정 등
	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사자 교육기획, 프로그램 개발,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○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·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○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전산관리시스템 구축·관리 ○ 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○ 홍보, 민간자원 개발·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○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
서울시	가족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의 검토·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○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, 점검 ○ 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○ 서울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·조정 등
	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,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○ 시설정보시스템 관리·평가사업·아동복지교사 교육 등 지원 ○ 서울시 특성화사업 개발 ○ 홍보, 정보관리, 민간자원 개발·연계지원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 ○ 서울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
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센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관리, 예산지원 등 운영 ○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·종결 관리 ○ 아동복지교사 예산집행, 운영관리(채용·계약, 배정·노무, DB관리 등) ○ 지역아동센터 지도·점검, 후원금 내역 관리 ○ 자치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·조정 등
지역아동센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○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

□ 세부사업별 지원계획

① 기본운영비(국비30%, 시비70%)

■ 2018년 주요 변경지원 사항

(단위 : 천원)

구분 (이용아동수)	상근 종사자	지원 기간	지원 기준액				전년대비 단가증가
		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
19인 이하	2인	12개월	월 4,020	월 4,142	월 4,188	월 4,510	322(7.68%)
29인 이하	2인	12개월	월 4,230	월 4,360	월 4,409	월 4,760	351(7.96%)
30인 이상	3인	12개월	월 5,568	월 5,770	월 5,871	월 6,540	669(11.39%)

■ 지원개요

- 지원개소 : 421개소('17.12월 기준)
- 지원기간 : 2018년 1월 ~ 12월
- 지원내용 : 종사자 인건비, 운영관리비, 프로그램비 등
- 지원금액 : 유형별(이용아동수별) 차등지원(상단 표 참조)
- 예 산 : 27,317,580천원

■ 지원시설 선정 기본방향

- 2017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하여 선정
- 2016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
- ※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 월부터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

■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

- 선정방법 : 2018년 예산(안) 계상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, 평가결과, 시설정보시스템 시설통계 자료 등을 통해 자치구 결정
- 지원기준 : 이용아동 수 및 상근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
 - 자치구 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,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

②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(국비30%, 시비70%)

■ 지원개요

- 목 적 :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재정지원 강화
- 지원개소 : 61개소
 - 자치구별 특수목적형으로 배정된 시설 수 범위 내에서 적정운영 시설 선정
- 지원기간 : 2018년 1월 ~ 12월
- 지원금액 : 개소당 월 609천원
- 예 산 : 445,788천원

■ 지원대상

- 장애·다문화·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
- 저녁돌봄(20시 이후 또는 중학생 이상 비율이 50% 초과하는 시설),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
 - 저녁돌봄 운영지원의 경우, 사회복지공동모금회·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

■ 선정기준

-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(예시)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

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(예시) 〉

- ① 지역적·환경적,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(장애, 다문화, 새터민, 저녁돌봄,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)
-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
- ③ 평가·지자체 점검결과,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
-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

3]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(국비30%, 시비70%)

■ 지원개요

- 목 적 : '12년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
- 지원개소 : 168개소
 - 자치구별 개소수의 30~60% 내외, 토요일운영으로 배정된 시설 수 범위 내에서 적정운영 시설 선정
 - ※ '12년 160개 ⇒ '13년 223개 ⇒ '14년 220개 ⇒ '15년 224개 ⇒ '16년 217개 ⇒ '17년 168개
- 지원기간 : 2018년 1월 ~ 12월
- 지원금액 : 개소당 월 304천원
- 예 산 : 614,454천원

■ 선정기준

-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(예시)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(반드시 주6일 이상 운영)

〈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(예시) 〉

-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곳
-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 곳
- ③ 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고 없고 역량이 우수한 시설
-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

4] 우수 지역아동센터(국비30%, 시비70%)

- '18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「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」 이 확정된 후 지침 별도 시행

5]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(국비30%, 시비70%)

- 목 적 :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일자리 제공
- 지원대상 : 아동복지교사 385명
 - 자치구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 채용
- 선정방법 : 자치구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사·선발

○ 지원단가 : 1인당 평균 115만원/월

○ 지원내역

근무유형		교사분야	배정인원	기본급	보험가입	퇴직금
전일 근무교사	전일 (주40시간)	지역사회복지사	25명 (자치구별 1명)	월 1,660,000원	사회보험 전체	지급
	전일 (주25시간)	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	360명	월 1,010,000원	사회보험 전체	지급
단시간 근무교사	단시간 (주12시간, 60시간 미만)			월 610,000원	고용·산재보험	미지급

- ※ 지역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전일제, 단시간 근무교사의 비율은 60:40으로 채용 권고하나, 자치구별 예산배정 내역 및 채용상황에 따라 적정인원 채용가능
- ※ 지역사회복지사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자체 규정 등에 따라 지급(지역사회복지사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)
- ※ 단시간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건강검진 실시(연 1회 건강검진비 3만원 한도)
- ※ 기본급에는 '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' 포함
- ※ **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관계부처 합동, 2017.7.20.) 및 이후 추가 지침을 준용하여 자치구별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진행(가족담당관-341, 2018. 1. 5.)**

- 지원방법 :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(자치구는 근무일지 확인 후 매월 지급)
- 지원내용 : 1개 지역아동센터에 1~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, 아동의 학습 지도 및 독서, 예·체능 활동 등 지원
- 지원분야 : 총 5개 분야
 - 지역사회복지사, 아동지도, 기초영어, 독서지도, 예체능 활동 지원
- 소요예산 : 4,894,740천원

6] 지역아동센터 평가비 지원(국비30%, 시비70%)

- 목 적 : 기존 및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서비스 점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역량 제고
- 지원대상 : 142개소(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 시설)
- 지원내용 : 시설당 623천원
- 지원방법 :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(보건복지부 소관)로 교부
- 소요예산 : 88,576천원

7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지원(국비30%, 시비70%)

○ 목 적 :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,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지원 전문기관

○ 주요사업

- 지역아동센터 신규 및 평가미흡, 희망시설 컨설팅, 현장평가 모니터링, 운영 관련 상담 및 안내
-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·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
-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운영·지원
-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
- 서울시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
- 서울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
-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
- 행정회계 및 기타 서울특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등

○ 운영주체 :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(대표 전병노)

- 협약기간 : 2018. 1. 1 ~ 2020. 12. 31(3년간)

○ 인 력 : 총 5명(단장 1명, 종사자 4명)

○ 소 재 지 : 서울시 중구 난계로11길 14 다운빌딩 2층(☎ 2632-3125)

○ 지원방법 : '18년 사업계획서 확정 후 청구에 의거 분기별 교부

○ 지원내용 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

○ 소요예산 : 326,800천원

8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(시비100%)

○ 근 거 :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
○ 목 적 :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을 보완하여 아동에 대한 안정적·정서적 서비스 강화

○ 지원방안 : 타 사회복지 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

○ 지원현황('12년 ~ '17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비고
시설장	월 130	월 160	월 190	월 220	월 220	월 250	월 300	전년대비
종사자	월 130	월 160	월 190	월 220	월 220	월 250	월 300	50천원증

○ 지원대상 : 운영비 지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

※ 국비 지원시설 및 설치·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로 (사비)운영비 지원결정 시설 법정 종사자

○ 지원기간 : 2018년 1월 ~ 12월

※ 기존시설은 1월부터, 신규시설은 1년 이상 운영시설로 (사비)운영비 지원과 연동하여 운영비 지원 개시 월부터 지원

○ 지원금액 : 1인당 월 300천원('17년대비 5만원 증액)

○ 지원방법 :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(자치구 대상자 신청 → 시 재배정 → 자치구서 개인별 계좌 입금)

○ 소요예산 : 3,707,000천원

- 산출기초 : 1,030명 × 300,000원 × 12개월 = 3,707,000천원

9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(시비100%)

○ 지원방안 : 설치·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전 최대 1년간 운영비 보조

※ 국고보조 기본운영비(국비 30%, 시비 70%) 지원 원칙 :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 중 신고일 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

○ 지원기준

- 시설 설치 및 법정 종사자 기준에 하자가 없는 센터
- 시도지원단의 의무 운영컨설팅 후 지적사항 등 보완이 완료된 센터
- 운영비 지원 신청 전까지 10인 이상 이용아동 운영 실적이 있는 센터
- 자치구 지도 점검 결과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처분(행정절차법 상)을 받지 않은 센터
- 그 외 구청장이 시설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센터
- 위 사항을 참조하여 자치구가 선정·추천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

○ 지원대상 : 국비 미지원 시설 11개소('18.1월 기준)

○ 지원기간 : 2018년 1월 ~ 12월

○ 지원방법 : 대상 센터 보조금 지원 승인 요청(자치구 → 시),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(시 → 자치구)

※ 보조금 지원 승인 요청 시, 예산의 분기별 재배정 일정(1월, 3월, 6월, 9월)을 고려하여 현장점검, 운영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를 증빙문서로 제출

○ 지원금액 : 정원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

(단위 : 개소, 천원)

유형별	정원	상근종사자	개소수	지원 기준액		비 고
				2017년	2018년	
소규모형	19인 이하	2인	7	월 1,500	월 1,600	설치신고일 및 지원 결정일에 따라 시설별 지원개시일 상이
표준형	29인 이하	2인	1	월 1,600	월 1,700	
확대형	30인 이상	3인	3	월 2,000	월 2,000	

○ 소요예산 : 224,400천원

10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(시비100%)

- 지원대상 : 지원 기준 월 현재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(미지원 시설 포함)
- 지원내역 : 캠프 및 문예행사비(차량임차, 프로그램비용 등)
- 지원금액 : 이용 아동 1인당 16천원 상당
- 지원시기 : 2018년 3월(상반기), 9월(하반기)
- 지급방법
- (센터)사업계획서 제출 ⇒ (자치구)검토 후 사업비 신청 ⇒ (시)사업비 교부
- 소요예산 : 368,000천원

11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% 추가지원(시비100%)

- 지원대상 : 구립지역아동센터 중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자치구별 1개소 지원
- 지원조건 : 공립형 센터는 종사자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, 자치구 및 서울시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·협력사업 추진
※ 신규신청 공립형센터의 경우 서울시 검토 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또는 익년부터 지원
- 지원내용 : 시설 유형당 기본운영비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원
- 운영현황('17.12월 기준)

(단위 : 개소수)

구분	성북	강북	노원	은평	서대문	구로	영등포	동작	서초	강동
구립 센터(26)	4	1	10	2	2	1	2	1	1	1
공립형 지원센터(10)	1	1	1	1	1	1	1	1	1	1

○ 소요예산 : 367,440천원

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인트 지원(시비100%)

- 지원대상 : 운영비 지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
※ 국비 지원시설 및 설치·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로 (시비)운영비 지원결정 시설 법정 종사자
- 지원기준 : 10호봉 미만 연 150포인트/10호봉 이상 연 200포인트
※ 서울시 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공통 지원기준」 준용
- 사용범위 : 건강체육시설·레저시설 이용, 건강진단, 자기계발비, 여행비 등
- 소요예산 : 165,669천원

13 지역아동센터 냉·난방비 지원(시비100%)

- 지원대상 : 운영비 지원시설
※ 국비 지원시설 및 설치·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로 (시비)운영비 지원결정 시설
- 지원기간 : 하절기 폭염 및 동절기 폭서 대비(총 4월)
※ 자치구별 시설 수요조사에 의거 시설별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, 사회복지공동모금회·자치구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
- 지원금액 : 1(개소) × 10만원 × 4(개월)
- 소요예산 : 170,800천원

14 공립형센터 설치지원

- 지원대상 : 자치구 수요에 의거 '18년 예산 반영된 자치구
- 지원방법 : 자치구 사업계획서 '18.1월중 제출(자치구 → 시),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승인 후 예산 배정(시 → 자치구)
- 지원금액 : 설치비 최대 5억, 리모델링비 최대 3억
- 세부사항 :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기능, 설치 및 운영기준,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·지원기준 준용
※ 방과후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·지원기준 (아동청소년 담당관-13285호, 2013. 5.29.,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9호)
- 소요예산 : 700,000천원

IV 소요예산

□ 예산액 : 40,358,927천원

(국비 10,396,685천원 / 시비 29,962,242천원)

□ 사업별 내역

세부사업		통계목	금액(천원)	재원
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(국비보조사업 총계)			34,655,618	국비30% 시비70%
지역아동센터운영(국비) (기본운영비)			27,317,580	
특수목적형(국비) (특성별운영비)		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(307-10)	445,788	
토요운영(국비) (특성별운영비)			614,454	
우수 지역아동센터(국비)			967,680	
아동복지교사파견(국비)			4,894,740	
평가 및 평가단운영(국비) (평가비 지원)		민간위탁금 (307-05)	88,576	
시도지원단 운영(국비) (서울시지원단 지원)			326,800	
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(시비) (시 자체사업)			5,703,309	시비100%
내역 사업	종사자 처우개선비	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(307-10)	3,707,000	
	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(국비미지원)		224,400	
	아동행사비 지원		368,000	
	공립형센터 기본운영비 50% 추가지원		367,440	
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		165,669	
	냉방비 지원		170,800	
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지원		자치단체 자본보조 (403-01)	700,000	

V 행정사항

□ 서울특별시

-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계획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, 예산 지원
- 지역아동센터 관련 주요정책 계획 수립·시행 등

□ 자치구

- '18년 변경된 지침 참조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·시행
 - 기본운영비 기준액 변경 등에 따른 지원시설 선정기준 수립 및 지도·점검
 - 특수목적형,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등 선정·관리
- 지역아동센터 파견 인력 관리
 - 아동복지교사 관련 직접 채용 및 배정, 관리
 - 뉴딜일자리 아동돌봄도우미 채용 및 배정, 관리('18.4월~'17.11월 운영예정)

□ 지역아동센터

- 보건복지부·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
-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·정산 등

□ 기타 세부사항

-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용
 -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(가족담당관-629호, 2018. 1.10.)
 - 20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통보(가족담당관-340호, 2018. 1. 5.)